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7
----------	--------

제출연월일	2005. 3. 3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정비

-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 →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

나. 특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기능·체육·예능 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다. 우등장학생의 자격정지 기준을 변경함

-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하 →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

라.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함

○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지급 → 40일 이내 지급

마.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1. 27 ~ 2005. 2. 1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제1조중 “지역”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하고, “곤란한 자”를 “곤란한 학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같음한다.”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를 “예능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중 “지급받는 자는”을 “지급받는 학생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본문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중 “50일”을 “40일”로 한다.

제9조제1항본문중 “선발된 자가”를 “선발된 학생이”로 하고, 때까지 다음에 “장학금을”을 삽입 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하로”를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퍼센트 이하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장학생 선발) ①시새마을회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u>시장</u>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고, 그 결과를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 ②(생략)</p>	<p>제5조(-----) ①----- -----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u>50일</u>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 ----- ----- ----- <u>40일</u> ----- ----- ----- -----</p>
<p>제9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u>선발된 자가</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삽입>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u>100분의 60 이하로</u>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p> <p>3~5. (생략) ② (생략)</p>	<p>제9조(-----) ① ----- <u>선발된</u> <u>학생이</u> ----- ----- <u>장학금을</u> ----- ----- ----- ----- ----- ----- ----- -----</p> <p>1. (현행과 같음) 2 ----- ----- <u>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u> <u>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u> ----- ----- ----- ----- ----- -----</p> <p>3~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발 취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616호)

제16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 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에 의거 시행한다.

②중·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 ‘과목명’ , ‘단위수’ , ‘성취도’ , ‘석차/재적수’ 를 산출하여 각 학기 말에 입력한다.